<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1144		
최초 등록일	2022.10.31	최종 등록일	2023.08.28

화평동왕냉면 정보공개서

[㈜에이치비에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 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연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치비에스

대	표	번	호	1 5	8 8	3 - (6 0	2 0	파	스	번	호	02-466-9200
가 맹	사 업	운 영 박	쿠 서	가	맹	사	업	부	가민	병부 서	전 화	번 호	1 5 8 8 - 6 0 2 0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15, 2층(중곡동, 대광빌딩)								
홈	페	01	지						WW۱	w.food	core.r	net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민원참여'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피브릿지협동조합으로부터 2021.05.18 에 화평동왕냉면 가맹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해피브릿지협동조합과 계약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승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 ★Ⅱ-4.5,6,7,8에 기재된 사항은 양도인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 자료입니다.
 - *당사는 행정구역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영업지역으로 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그 외의 지역은 ㈜해피브릿지에프앤씨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합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에이치비에스의 "화평동왕냉면"]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화평동왕냉면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1.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2021년 05월 10일	사업자등록일	2021년 05월 13일
법인등록번호	110111-7881223	사업자등록번호	445-88-02233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대표자	대표번호
가맹본부	㈜에이치비에스	이구승	1588-6020
	이구승 (대표이사)	영업표지	주소
특수관계인 (임원)	박 은 주 (사 내 이 사) 문 성 환 (사 외 이 사) 송 인 창 (감 사)	화평동왕냉면 외 6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15, 2 층(중곡동, 대광빌딩)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소	대표자	
	해피브릿지협동조합	2021.05.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구승	
	/국수나무	2021.00.10	장한로 37,2,3 층(장안동)	9110	
) 가맹본부가	해피브릿지협동조합	2021.05.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구승	
다른 기업의	/화평동왕냉면	2021.03.10	장한로 37,2,3 층(장안동)	VI 1 6	
일부 브랜드를	해피브릿지협동조합	2021.05.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구승	
인수함	/도쿄스테이크	2021.05.10	장한로 37,2,3 층(장안동)	MT6	
	해피브릿지협동조합	2021.05.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구승	
	/루타 6,400km	2021.05.10	장한로 37,2,3 층(장안동)	NT6	
			서울특별시 광진구	0.71.11	
) 가맹본부가	집생로커피/집생로커피	2022.04.26	아차산로 51 길 90.	윤경선 ㈜에이치비에스	
다른 기업에			1 층(구의동)		
브랜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0.71.11	
인도함	집생로커피/뼈고집	2022.04.26	아차산로 51 길 90.	윤경선 ㈜에이치비에스	
			1 층(구의동)		
	집생로커피		서울특별시 광진구	윤경선	
가맹본부가	/뼈고집	2022.09.01	아차산로 51 길 90,	㈜에이치비에스	
다른 기업의			1 층(구의동)		
브랜드를 인수함	집생로커피	2022.09.0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1 길 90,	윤경선	
	/집생로커피	2022.09.01	마사산도 51 월 90, 1 층(구의동)	㈜에이치비에스	

*국수나무, 화평동왕냉면, 도쿄스테이크, 루타 6,400km 브랜드는 2021 년 5 월 18 일 당사가 해피브릿지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가맹사업이며, 양수도 사실을 해당 브랜드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심사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1일에 모두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4 개 브랜드에 대해 행정구역 기준으로 당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영업지역으로 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그 외의 지역은 ㈜해피브릿지에프 앤씨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 년 8월, 당사는 서울시청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상, 하나의 정보공개서가 둘 이상의 가맹본부로 양수되는 경우, 양도회사가 사용하던 기존의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는 양수회사중 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양수회사는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회사가 사용하던 기존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는 양수회사중 ㈜해피브릿지 에프앤씨가 사용하고, 당사는 신규등록 형식을 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4개 브랜드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당사가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규정보공개서 등록전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로 체결한 가맹계약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화평동왕냉면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관련정보	BI
화평동왕냉면	화평동왕냉면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등록번호 4101191700000	활화평동왕생면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3,552,400	3,342,211	210,188	10,905,350	201,315	110,188
2022 년	3,285,378	2,608,169	677,208	20,726,803	513,097	467,020
2023 년	2,798,443	2,108,462	689,981	17,753,418	114	12,772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어티 서대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관련여부	성명	77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이구승	대표이사	2024.01~현재	㈜에이치비에스	경영총괄		
관련임원	박은주	사내이사	2023.12~현재	㈜에이치비에스	경영일반		
가맹사업	문성환	사외이사	2023.12~현재	㈜에이치비에스	경영일반		
비관련임원	송인창	감사	2023.12~현재	㈜에이치비에스	감사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000014 10 91 01 01	상근	비상근	0.1
2023년 12월 31일	2	2	۷ ا

^{*}원천징수신고 인원 총 22명중 상근 임원이 1명 포함되어 있어 직원 수는 21명입니다.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화평동왕냉면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국수나무 (20221141) 국수나무 Nacodles Tree Restaurant	2021.05~현재		
가맹본부	㈜에이치비에스	도쿄스테이크 (20221142) 도쿄스테이크		2021.05~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7667		루타 6,400km (20221143) 루타6,400km	2021.05~현재		
		아맵떡 (20212605)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화평동왕냉면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이미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서비스표	활화평동왕생연	2005.07.27	4101191700000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2025.07.27
권리 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운영권을 브랜드 양수도계약서에 기해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해피브릿지협동조합으로부터 2021.05.18 에 화평동왕냉면 가맹사업을 양수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해피브릿지협동조합과 계약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승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 * II 4, 5, 6, 7, 8 에 기재된 사항은 양도인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 자료입니다.

1. 가맹사업 시작일

화평동왕냉면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04년 03월 04일 입니다.

*상기 가맹사업 시작일은 (주)보리푸드앤컨설팅에서 최초 가맹점을 개설한 날입니다.

2. 화평동왕냉면의 연혁

화평동왕냉면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C3 C-	12 =18=1 2	<u> </u>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
㈜보리푸드앤컨설팅	화평동왕냉면	이구승	2004.03~2009.12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푸드코아	화평동왕냉면	이원호	2009.12~2010.01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해피브릿지	화평동왕냉면	이구승	2010.01~2013.2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해피브릿지	화평동왕냉면	송인창	2013.02~2014.02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7,2 층 (장안동)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조직 변경)	화평동왕냉면	송인창	2014.02~2016.02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7,2,3 층(장안동)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대표자 변경)	화평동왕냉면	김철환	2016.03~2020.02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7,2,3층 (장안동)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대표자 변경)	화평동왕냉면	이구승	2020.03~2021.05.17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7,2,3 층 (장안동)
㈜에이치비에스 (브랜드 양수도)	화평동왕냉면	배병한	2021.05.18 ~2024.0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15, 2 층 (중곡동, 대광빌딩)
㈜에이치비에스 (대표자 변경)	화평동왕냉면	이구승	2024.01.31~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15, 2 층 (중곡동, 대광빌딩)

*당사는 행정구역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영업지역으로 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그 외의 지역은 ㈜해피브릿지에프앤씨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합니다.

3. 화평동왕냉면의 업종

화평동왕냉면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화평동왕냉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4. 바로 전 3개년도 말 화평동왕냉면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화평동왕냉면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	년 12월	31일	2022	2년 12월	31일	2023	2023년 12월 31일		
시크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5	15	0	14	14	0	13	13	0	
서울	7	7	0	7	7	0	7	7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8	8	0	7	7	0	6	6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상기 내역 중 2021년 5월 17일까지는 양도회사인 해피브릿지협동조합에서 전국을 관리하였고, 당사인 ㈜에이치비에스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지역을 2021년 05월 18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화평동왕냉면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화평동왕냉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17	0	0	2	0	15
2022 년	15	1	1	1	0	14
2023 년	14	0	1	0	1	13

6. 화평동왕냉면 외에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화평동왕냉면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운영 주체	업종	영업 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외식	국수나무	20221141	231/0	212/0	195/0	
	외식	도쿄스테이크	20221144	10/0	7/0	6/0	
) 가맹본부	외식	루타 6,400km	20221143	3/0	1/0	1/0	
가영근구	외식	아맵떡	20212605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외식	뼈고집	20212606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외식	집생로커피	20212517	해당없음	3/0	4/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화평동왕냉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 가맹점사업기	다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	천원,VAT미3	E함)	
	2023 년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지역	말	연간평균	면적	상협	<u></u>	하	<u>하</u>	가맹점
	가맹점수	매출액	3.3㎡당	최고매출액	3.3㎡당	최저매출액	3.3㎡당	수
		메솔ㄱ	0.0 8	최고매출국	최고매출액	의시매골국	최저매출액	
전체	13	338,440	11,013	1,284,832	28,552	22,286	2,229	13
서울	7	203,642	7,664	603,587	15,090	22,286	2,229	7
부산	0		해당없음					
대구	0	해당없음						0
인천	0	해당없음						0
광주	0	해당없음						0
대전	0	해당없음						0
울산	0	해당없음						0
세종	0	해당없음					0	
경기	6	495,705	495,705 13,931 1,284,832 28,552 49,462 2,674					
강원	0	해당없음						0
충북	0			해당없	0			0

충남	0	해당없음	0
전북	0	해당없음	0
전남	0	해당없음	0
경북	0	해당없음	0
경남	0	해당없음	0
제주	0	해당없음	0

- * 상기내용은 가맹본부에서 공급한 원부재료 공급품 가격을 기준으로 가맹점 매출액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 *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공급 비율은 평균 약 33%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급비율은 가맹점 사입율 등으로 인하여 원가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 추정매출액은 = 가맹본부 가맹점 원부재료 공급품 가격/0.33 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지역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3	5,46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화평동왕냉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바로 전 사업연도의 당사가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에는 국수나무, 화평동왕냉면, 도쿄스테이크, 루타 6,400km, 아맵떡, 집생로커피, 뼈고집 가맹사업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 단	내 용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단위:원)
광고	비공개	비공개	358,694
판촉	비공개	비공개	110,320
합계	_	_	469,014

^{*}위 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지점	주소	고객센터
기업은행	성수2가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75-8	02-467-1755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화평동왕냉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2. 3. 4. 5. 	가입비 선정 점포 실사의 대가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개점 전 교육비	11,000,000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 2. 홍보지원비 3. 양수 전 교육비	5,500,000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5,000,000 (부가세 없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 가 보증금 을 초과하 는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합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16,000,000	10,500,000		
가맹비	11,000,000	5,500,000		
보증금	5,000,000(부가세없음)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화평동왕냉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V.A.T 포함/서울기준)

				금액				지급	반환조건/
		וכ	준면적	기준	면적	기준	면적	방법	반환될 수
구분	지급	9	99 m²		165 m²		231 m ²		없는 사유
一十正	대상		면적		면적		면적		
		금액	3.3㎡당	금액	3.3㎡당	금액	3.3㎡당		
			금액		금액		금액		
인테리어 설비비	정보 공개서	3,300	110	5,500	110	7,700	110	계약	
설비 및 집기비용	V-1의 거래	2,035	약68	2,530	약 51	3,080	44	체결 시	소요비용

구이기	상대방	880	약30	1,320	약 27	1,980	약 29	개별 계약	공제 후 반환
공사비용								계약	만완
초도 물품비용		231	약8	319	약 7	429	약 7		
홍보 및 기타품목비용		220	약8	330	약 7	440	약 7		
간판 및 사인물비용		660	22	990	약 20	1,100	약16		
합계	-	7,326	약 245	10,989	약 220	14,729	약 211		_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 ² 당 330,000 원								

- *위 표의 면적 3.3 ㎡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전기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 <u></u>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계약금)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7101 7171 1
에지 기장마(게ㅋㅁ)	16,000,000	10,500,000	계약 체결 시
왕			
잔금	별도협의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이내	2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이후 10일 이내	5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가맹점 개점 이전	70%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화평동왕냉면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
) 가맹점사업자	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가영검사합사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
	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별첨 1]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개점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액(단위: 원, VAT 포함)	지급	반환여부 및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또는 산정기준	기한	반환조건						
로열티				해당사항 없음								
	수시 교	1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개점 이후 교육비	이후		특별 교육		특별 교육		특벽 교육		가맹 본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개별 청구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가맹 판촉물 제작 비용은 본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30%, 가맹점사업자 측 7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모바일 성 이용 수		해당없음									

			점포의 확장 또는		
	71 m 7 m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간판교체,		경우 가맹본부		
점포	인테리어	협력	분담비용		
환경	(장비, 집기의	87	20%를 제외한 나머지		VII-1 참조
개선	교체비용	업체	점포의 확장 또는		
비용	제외한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청구	금전지급의무
					또는
	금전지급의무				본 계약의
지연	의 지급기한	가맹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위반으로
이자	경과시	본부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부담하는
0174	지연이자		MESIC 2/1/1 C 0/0		금전지급의무의
	지근이지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수집,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화평동왕냉면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화평동왕냉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 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조리/운영 매뉴얼 등 가맹점 운영시스템 지원에 관한 모든 자료 및 기술정보, 장비,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되거나 표시되어 있는 내·외장시설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고 이를 변형하여 당사소유의 지식재산권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철거비용은 계약종료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2) 당사 및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또는 대여 받은 기기 및 내장물에 대하여 임의 철거하지 못하며 지원 및 대여 받은 품목을 당사 및 협력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가. 귀하가 당사의 화평동왕냉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 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품목의 세부 내용들은(원부재료의 품목 및 제조사 포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E E	품목 단위		공급가격(단위:원)	ו	
순번		건귀	상한	하한	구분	
	별첨 2 참조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국수나무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당사의 화평동왕냉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년 도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미고
해당없음					

나. 당사가 당사의 화평동왕냉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 터 직전 년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화평동왕냉면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 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상품・용역명천황갈비황제갈비참 양념구이LA양념갈비양념구이소 왕갈비화평동 물냉면화평동 비빔냉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	위반시 책임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 시정요구 후 계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화평동 미담영면 화평동 회냉면 화평동 교복냉면 갈비탕 육개장 꼬맹이 만두 손만두	OB	약 해지	윤

- * 신 제품 출시 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신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며 지역적특성 등에 따라 추가 제품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제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사전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전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 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 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가맹점이 속한 시장의 여건에 따라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냉면류를 주로 제공하면서 고기를 굽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화평동왕냉면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	방법
---------	----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300m (단, 특수상권은 제외)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란, 역세권(각 출구), 아파트(1,000세대)단지,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으로 구분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별도의 상권으로 정하고, 해당 별도의 상권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로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 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 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 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당사의 영업표지 이미지 등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귀하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 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가.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브랜드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배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브랜드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어 드	ㅣ ㅇㅠㅋ이 줘요ㅆㅍ 비즈	ㅣ ㅇ미이 뭐으시죠 비즈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화평동왕냉면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 이며, 재계약(갱신) 시에도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 190 - D 00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	
ንነ ?	D-180 ~ D-90
예→B, 아니오→®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	
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	
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	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 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8조2	2항	각호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			
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금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이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명칭을 사업자/법인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변경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복장규정을 위반하여 당사로부터 2회이상 통보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임을 표방하는 경우	53조1호
가맹점사업자가 매뉴얼 준수 의무 또는 매뉴얼 유출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통 제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추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의 실시하는 교육	
참석을 2회이상 거부 불참하는 경우	
당사의 시정요구와 보수교육이 있은 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보험 가입하지 않아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필요시 소집하는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 위반으로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서 매뉴얼 등의 정보를	
누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경업 또는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가 시행하는 공동광고활동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가 시행하는 공동판촉활동에	
불참하는 경우	
가맹점사업가 당사가 제공하지 않았거나 서면동의가 없는 간판이나	
포스터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된 제품 이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처요구품목을 자점매입하는 등 영업의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금전 채무 지급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체결3월이 지나도 매장을	53 조 2 호
개점하지 못하는 경우	50 표 2 호
가맹점사업자가 양도 규정을 위반하여 양도를 한 경우	53 조 3 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기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50조 2항 각호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3	5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50 조	1 항 =	각호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54조 각호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5)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 및 겸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경업 및 겸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화평동왕냉면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

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일반인에게 냉면류를 주로 제공하면서 고기를 굽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화평동왕냉면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화평동왕냉면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1:00 ~ 23:00	월 26일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과그 서 그	부담비율		브다저워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의 70% /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공동광고	상품광고 등		가맹점사업자수	가맹점부담액 제시(광고1개월 전)→ 제시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가맹점모집광고	100%	-	-	
	얼마 기에 때 그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의 행사참여 여부 결정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가행점의 행사점이 여구 결정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는 50%이상, 판촉은 70% 이상의 가맹점사업 자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당사는 전체 가맹점주에게 광고비(판 촉비) 분담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촉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는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글 라고에까가 마습니다.		
위약벌 등 사유	관련 계	약조문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33 조(비밀유지의무), 34 조(경업 및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겨 제60조	
귀하가 제 41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42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	제2항
귀하가 제 52 조 및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일 익일로부터 1일 금이십만원(₩200,000원)씩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벌로 당사에게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	제4항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한다.	제60조	제5항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0조	제6항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조	제7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 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일 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6%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1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588-6020).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_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_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정보공개서,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 14 일 이후 계약	IV.가맹점사업자의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즉시	부담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즉시~15 일	1. 영업개시이전 부담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철거일로부터 3일이내]금전지급 방법 참조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5일이네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30~40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5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30 시간	
개점	- 개점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개점결정)	D-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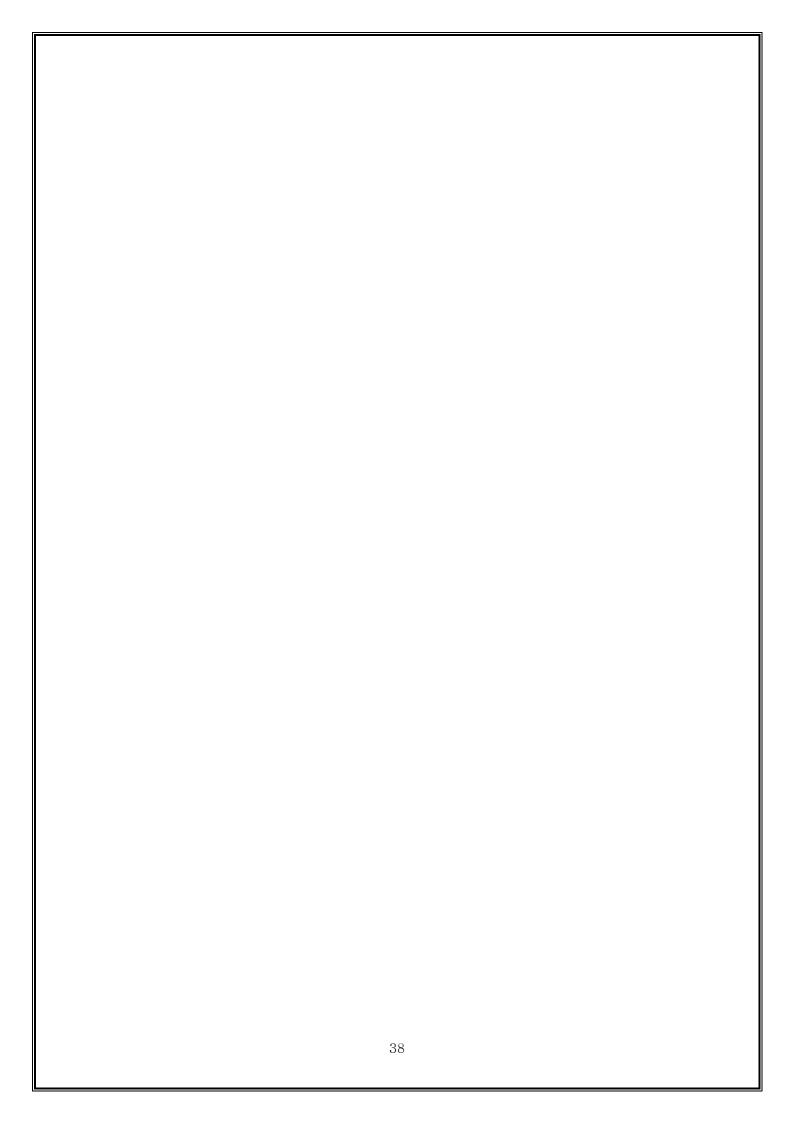
- 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0	점포의 시설,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점포의 확장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ㅇ점포환경	
	장비 인테리어	ㅇ 인테리어 공사	또는 이전을	청구(공사계약서 등	개선일로	
	등의 노후화가	비용(장비·집기의	수반하지 않는	공사비용을 증빙할	부터 3년	
	객관적으로	교체비용을	점포환경개선	수 있는 서류 첨부)	이내에	
	인정되는 경우	제외한 실내건축	: 20%	→ 90일 이내에 가맹	가맹본부의	
0	위생이나 안전의	공사에 소요되는	ㅇ 점포의 확장	본부 부담액을 가맹	책임없는	
	결함으로	일체의 비용.	또는 이전을	점사업자에게 지급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	단, 가맹사업의	수반하는	(단, 가맹본부와 가	계약이	
	업의 통일성을	통일성과	점포환경개선	맹점사업자간 별도의	종료(계약의	
	유지하기 어렵	무관하게 가맹점	: 40%	합의가 있는 경우	해지·영업	
	거나 정상적인	사업자가 추가		1년의 범위내에서	양도	
(영업에 현저한	공사를 실시함에		분할지급 가능)	포함)되는	
	지장을 주는	따라 소요되는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경우	
	경우	비용은 제외)		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	가맹본부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부담액 중
	끝난 날부터 9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잔여기간에
	을 지급	비례하는
	<분할지급 시 절차>	부담액은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	지급하지
	용 청구(공사계약서	아니하거나
	등 공사비용을 증빙	0 0
	할 수 있는 서류 첨	지급한 경우
	부) → 3차에 걸쳐	에는 환수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능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화평동왕냉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자세한 교육 스케줄은 가맹계약 이후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 * 아래 일정 중 교육 시간은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상기 일정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개별사정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화평동왕냉면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 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개점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30시간	최초 가맹비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개별협의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필요시 실시
재교육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비스교으		고객 컴플레인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개별사	
보수교육 -		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필수) 및 종업원(협의)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VAT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해당없음	

별첨 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가. 인테리어, 간판 및 사인물, 설비, 집기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나. 원부자재 및 소모품 내역

2024년 8월 9일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일 기준

*하기 품목 등의 내역은 상기 2024년 8월 9일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9월 1일부터 거래상대방이 '쿠거'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상기 품목, 강제/권장 여부, 거래상대방 등은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변경된 내역을 알립니다.

별첨 2 주요물품의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2023년의 공급 가격이며, 일부 품목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현재 공급되는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공급가격의 상·하한 기재시, 2023년에 가맹점에 공급한 내역이 없거나, 공급가격의 상·하한 산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급가격 상하한의 품목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총 40개의 품목 중 20개의 품목을 기재하였습니다.

별첨 3 재무현황재무상태표2021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022 년, 2023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u>손익계산서</u> 2021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022 년, 2023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